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2019. 5. 10

이 진 호 [한남대]

백 강 [한밭대]

목 차

1.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방안

- 1) 추진 배경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
- 3) 기대 효과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 1)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목 차

1.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방안

- 1) 추진 배경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
- 3) 기대 효과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 1)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추진 배경 (1)

성장 · 발전



-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
- ② 위험 분산
- ③ 유동성 제공
- ④ 정보수집의 효율성 증대
- ⑤ 시장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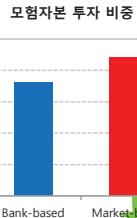
...

참고: 한국은행(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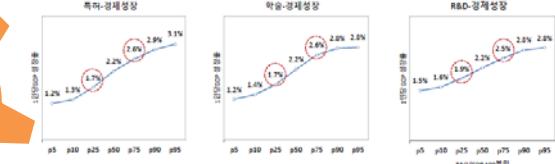
추진 배경 (2)

• 자본시장 & 혁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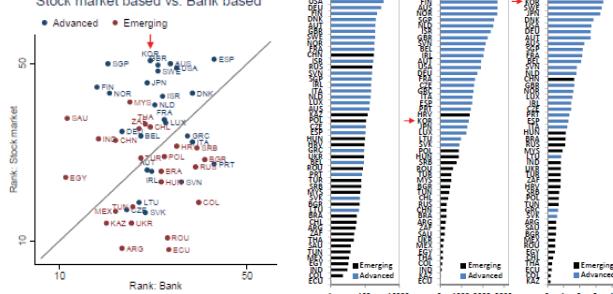
(신보성·빈기범·박상용, 2005; 김준석·권민경, 2017)



• 혁신활동 & 경제 성장 (김준석·권민경,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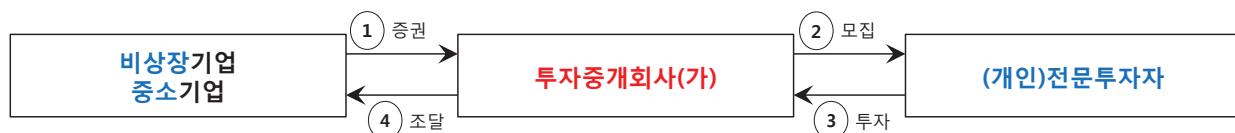


Stock market based vs. Bank b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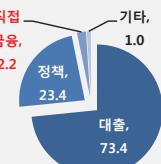
5

추진 배경 (3)



1 자본시장 접근성 한계

- 상장기업 위주, 대출 중심 자본조달체계



- 중기벤처기업의 고질적인 자본조달 애로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중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관리'를 74.6%가 응답

- 엔젤 및 VC투자의 사후 역할 미미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엔젤투자 미경험 97.4%, VC투자유치 미경험 94.2%
- VC투자유치 경험 벤처기업 중 93.4%는 '자금투자 외 VC의 역할이 없었다'고 응답

3 증기특화증권사 제도의 반성

- 증기특화증권사의 기업발굴 기능 의문

- 2018년 코넥스 21개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중 증기특화증권사는 2곳(7건)에 불과
- KRX의 KSM 등록 101개 기업 중 증기특화증권사 활용 기업은 3곳에 불과

• 높은 진입장벽

- 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크라우드펀딩업) 제외한 모든 투자매중개업은 '인가제'

• 기대수익 대비 높은 규제비용

- 특화전문 소형증권사도 여타 증권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 증기특화증권사로서의 인센티브에 비해 자격유지 조건 과다

2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필요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경로 불비
 - 투자경험, 전문지식 등에 대한 기준 불명확

• 번거로운 등록절차

-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협회 등록 준수 필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마련

[진입요건]

-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초기위험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
- 손실감내능력: 직년년도 소득액 1억원(개인) 또는 1.5억원(부부 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등록절차]

- 협회 → 금융투자회사

[투자자보호]

-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조항 신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



구 분		기존 증권회사 (투자증개업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업무 범위	고유업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 중개 일반	전문투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및 기업금융업무 전반 허용)
	겸영업무	자금이체, 외국환업무, 퇴직 연금, 전자금융업무 등 금융 관련법령 상 허용된 업무	대출 중개·주선·대리 ※ 고객개좌 개설·관리 등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
진입 요건	대주주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엄격한 사회적 신용 요구 (일정기간 내 제재 받은 경우 결격 발생 등)	차동
	이해상충방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차동
	진입제도	인가제	등록제
	자기자본	취급상품범위에 따라 차동(5억 ~ 150억* 이상) * 일반투자자 대상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전부 취급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중개업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 펀딩업 최소 5억원)	5억원 이상
	인력	취급상품범위에 따라 차동 (후선 필수인력 4인 포함 최소 5인 이상)	최소 2인 이상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적용 규제	물적 설비	업무공간 · 사무장비 외에 일정수준 이상 전산통신설비 구축 필요	최소한의 수준만 필요 (전산설비 불필요)
	사업계획	타당성 · 건전성 측면 (미충족 시 인가 불승인)	심사하지 않음
	건전성 규제	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미적용
	영업행위 규제	투자권유규제, 증권 예탁, 예탁금 별도예치 등	일부 규제 미적용
	기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지배구조법 일부 규제(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인 선임의무) 미적용

7

기대 효과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는 VC,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창업·성장’ 단계의 혁신기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시장참여자 역할 수행
-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및 특화·전문화 촉진
 - 종합 증권사 모델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증개회사’ 모델 출현
 - 모험자본 투자자와 기존 대형증권사의 연계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다양성 제고
 - 유사금융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으로 금융투자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증개 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8

목 차

1.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방안

- 1) 추진 배경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도입
- 3) 기대 효과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 1)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 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의 발전방안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1)

자본시장 관련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규제로의 전환 기대

- 자본시장법의 '법정신' 구현
 - 자본시장은 금융혁신의 장
 - 경제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성장 필요
 - 고위험-고수익 혁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자본시장 본연의 위험 증개기능으로 가능
 - 보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기능별 금융투자업자의 등장 기대
 - 여타 업권에 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기능별, 포괄주의 규율체제 가능
- 궁극적으로 '금융통합법'의 초석 마련 기대
 - 2003년 추진되었던 금융통합법은 금융시장의 산재한 규율체계를 기능별로 개편하여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 기능별 규율체계: 진입, 퇴출, 건전성감독, 영업행위규제 등
 - 특히,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 구축
 -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은행 중심의 자금조달 관행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2)

'시장'의 중요성 부각 (1)

- 최근 미국 사모 유통시장의 발전
 - 미국은 비상장증권의 발행 및 유통중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다양한 비공개 주식유통플랫폼 운영
 - 비상장공개회사 대상 유통시장은 OTC Market, OTCBB가 대표적
 - 비공개회사 대상 유통시장은 SharesPost, SecondMarket이 대표적이며, 현재 Nasdaq Private Market (NPM) 으로 합병 운영 중
 - 최근 NPM은 사모기업의 자금조달 및 특정거래 필요 시(On-demand)에만 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
 - 2012년 JOBS법 시행 이후 중소성장형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기인
 - 미국의 증권발행은 공모방식이 원칙이나, 다양한 면제요건(증권신고서 제출, 공시의무 등)을 제공하여 사모시장의 성장을 유도
 - Regulation D(Rule 504, 505, 506(b), 506(c)), Rule 114A, Crowdfunding 등
 - 특히 투자자보호 이슈가 적은 전문투자자 대상 등의 경우에 적용

참고: 강형철·엄경식 ·이지혜 ·이진호(2017)

11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2)

'시장'의 중요성 부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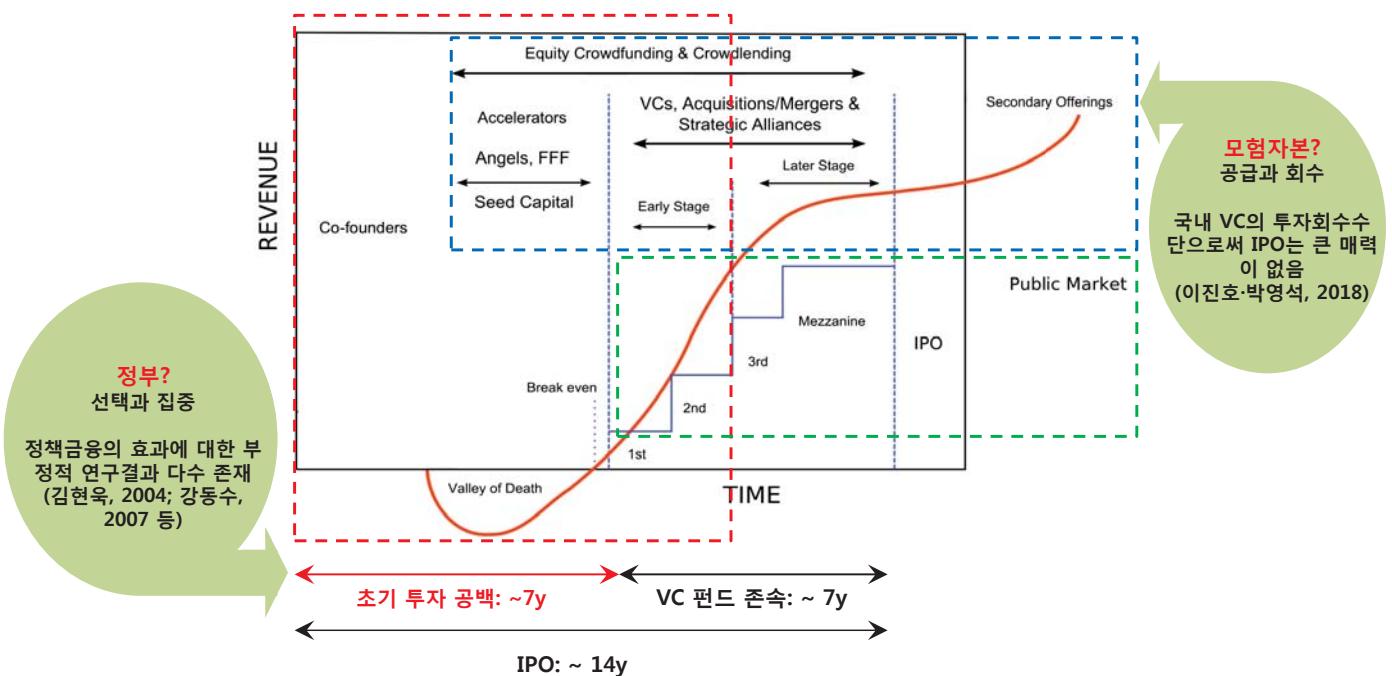
-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시장 위주로 설계되어 비상장증권 거래시장(장외시장)에 대한 고려 미흡
 - 장외시장 운영자 및 증권사의 서비스 영역이 협소할 수밖에 없음
 - 그렇다고 장외주식시장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님
 - 사설장외주식사이트를 중심으로 (음성적인) 순수 장외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황이 이를 대변
 -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개설 행위는 엄격히 금지
 - 예외적으로 인정된 ATS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에 한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불가, ATS가 아닌 증권사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내부주문집행 불가
 - 비상장증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시장 간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법의 정책적 큰 틀에서, 다양한 ATS의 출현이 시급함을 방증

참고: 강형철·엄경식 ·이지혜 ·이진호(2017)

12

시장거시구조 측면의 논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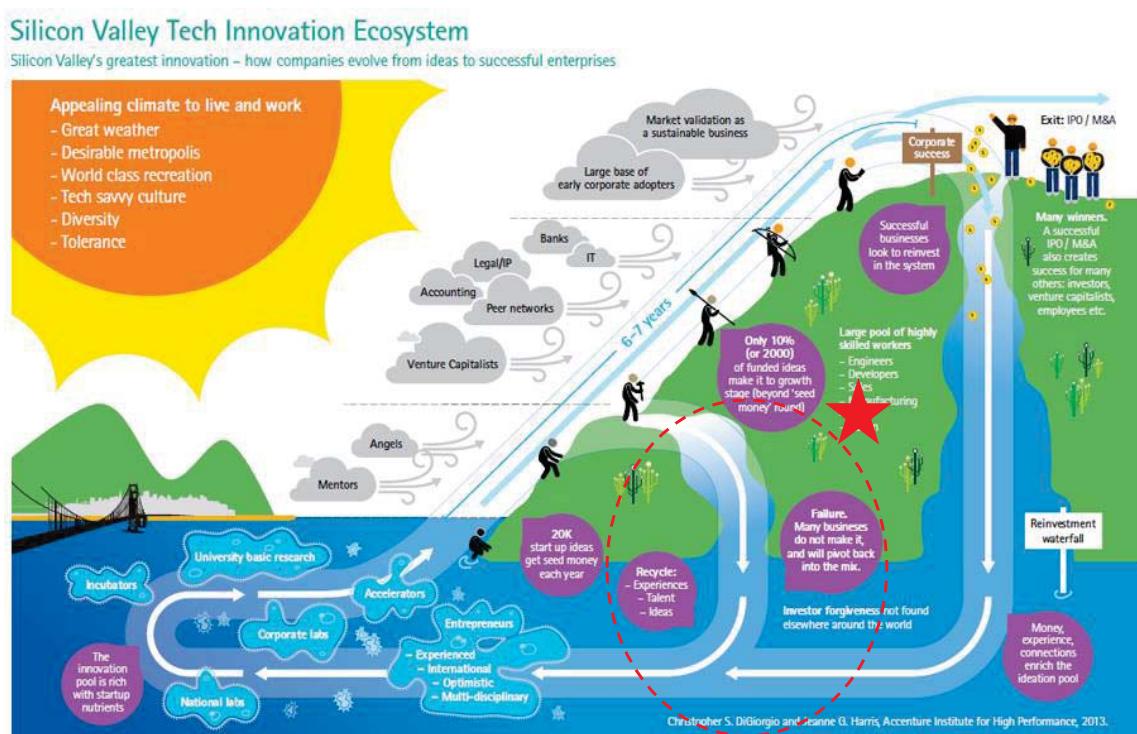
시장참여자의 유인



13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의 발전방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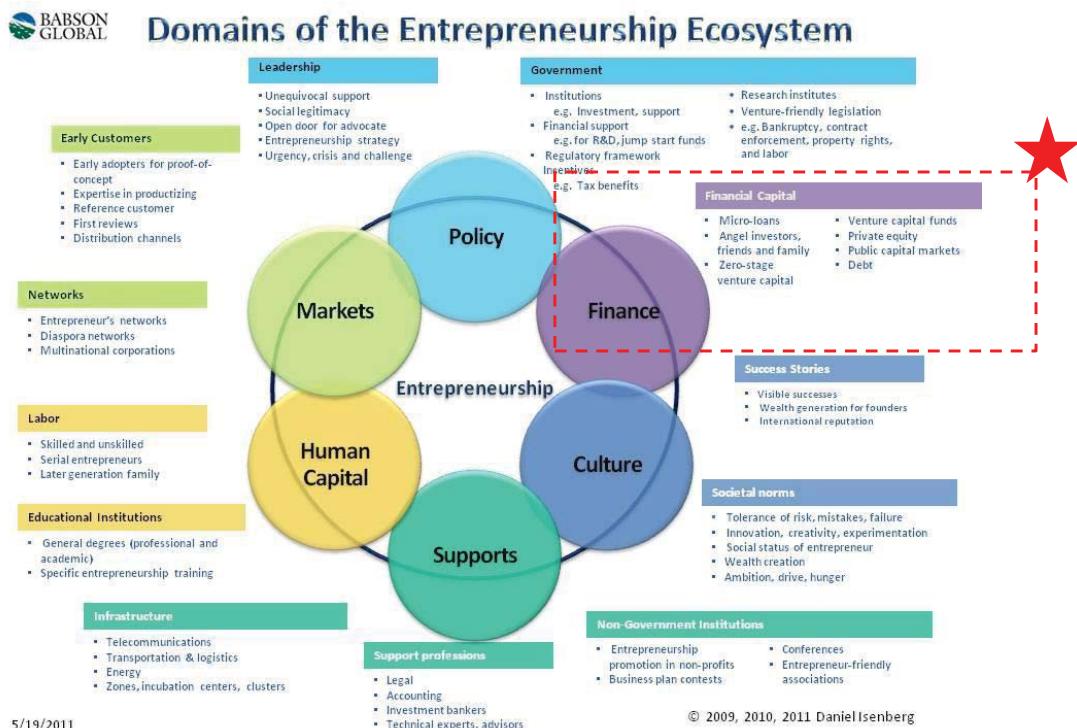
[정책] 생태계 조성 (1)



14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의 발전방안 (1)

[정책] 생태계 조성 (2)



15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의 발전방안 (2)

[시장] 다양한 자본시장의 위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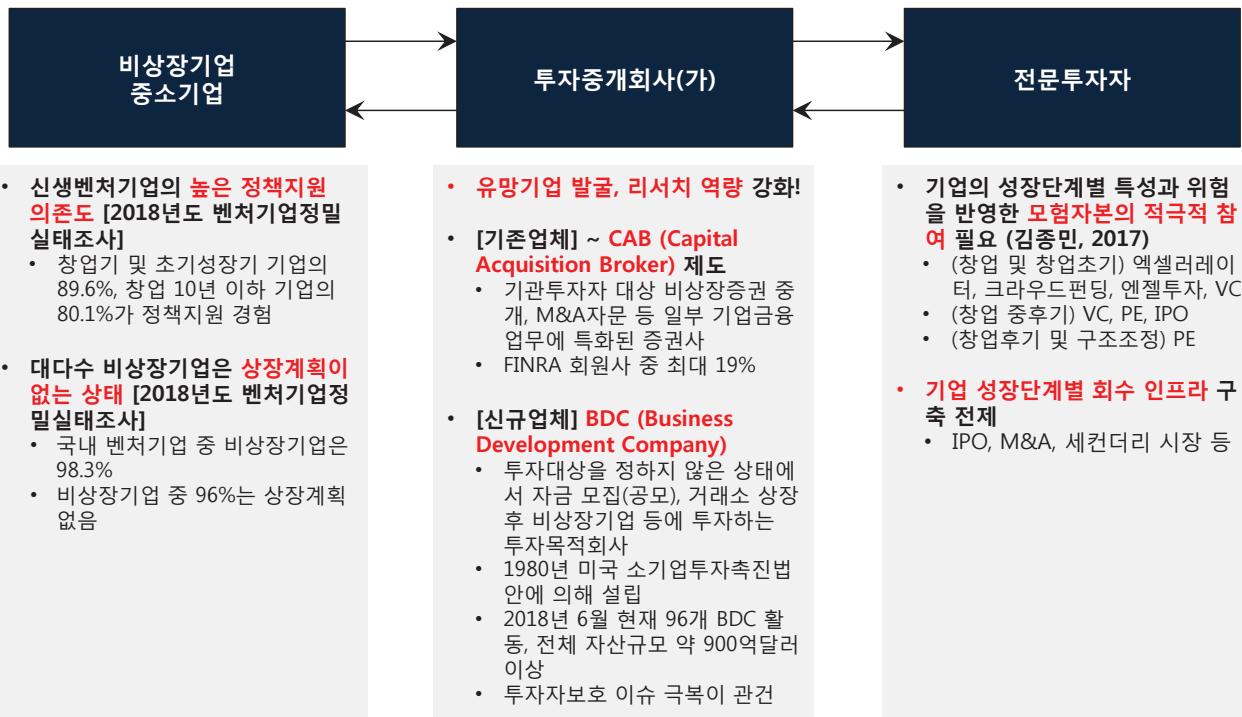
- **비상장주식 거래 ATS의 출현 및 경쟁**이 우선시될 필요
 - 발행기업 및 투자자와 접점에 있는 ATS가 **비상장기업** 발굴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이 가능한 ATS의 출현이 가능해야만, 거래플랫폼과의 경쟁, 협업을 통해 **국내 장외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국은 다양한 ATS의 출현과 경쟁을 기반으로 사모시장(사적자본시장) 성장
- 일방향 이전만을 지향하는 **독점적 거래소시장을 재편**할 필요
 - KRX는 “KSM → 코넥스시장 →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으로의 **획일적 일방향 이전시장 추구**
 - 정규시장 형태, 상장이라는 진입제도 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유연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
 - 글로벌 주요 거래소는 전통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가격발견기능(price discovery function)을 주로 담당하는 **거래시장(trading center)으로서 상장주식회사(listed firm)화**

참고: 강형철·엄경식·이지혜·이진호(2017)

16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증개회사” 의 발전방안 (3)

[인식] 자본조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17

감사합니다!